

\*\*\*\*\*

### 電氣通信事業法の 改正方向

\*\*\*\*\*

國際 VAN의 實現을 중심으로 한 電氣通信事業法の 一部改正案이 지난 5월에 제 108회 國會에서 通過되어 國際 VAN서비스 實施를 위한 法制度가 整備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에 의한 본격적인 國際 VAN서비스의 提供이 가능하게 되어 最近의 급속한 國際通信需要의 高度化, 多樣化에 대응할 수 있는 多元的 國際데이터通信서비스의 提供體制가 整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日本 郵政省 電氣通信局이 밝힌 이번 改正의 背景과 主要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 I. 電氣通信事業法 改正의 背景

##### 1. 國際데이터通信에 대한 需要의 變化

현재, 社會·經濟·文化등의 모든 面에서 國際間的 상호의존관계가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國際적으로 調和있는 發展을 꾀하기 위해서는 밀접한 國際交流가 불가결하게 되고 있다. 이 때문에 國境을 超越한 情報의 交流가 活性化되고 있으며, 이를 지탱하는 機能을 가진 國際通信이 해야 하는 役割이 급속히 增大하고 있다.

國際的인 情報化의 進展에 따라 國際通信에 대한 需要도 高度化, 多樣化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國際通信은 多樣한 通信需要에 效率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高度의 情報通信機能을 具備해야 한다. 특히, 産業界에서는 企業活動의 國際化에 대한 迅速한 對應을 위해, 企業活動實務에 有用하고 多樣한 國際通信, 특히 대량의 情報를 多地点間에 迅速하고 正確히 傳送함과 동시에 情報流通의 과정에서 多彩로운 價値를 附加할 수 있는 高度의 國際데이터通信의 導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時差와 距離를 克服하여 國際的으로 效率的인 企業活動을 展開하기 위해, 效率的인 國際間 接續에 의한 國內網의 國際化나 電子郵便시스템에 의한 情報流通의 24時間體制達成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國際的인 情報化의 進展과 國際通信에 대한 需要의 高度化, 多樣化에 따라, 앞으로의 國際通信은 高度의 情報通信機能을 갖춘 國際間 통신망으로 그 役割을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 2. 國際데이터通信서비스 提供體制 多元化의 必要性

國際데이터通信에 대한 需要는 급속히 高度化, 多樣化되어 가고 있는데 國際的인 데이터通信시스템의 構築에는 高度의 技術力과 많은 資金을 필요로 하므로, 效率的인 國際間 網을 構築하려면, 電氣通信事業者가 提供하는 國際데이터通信서비스의 多樣化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國際데이터通信서비스는 사실상 獨占狀態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多樣化하는 國際데이터通信 需要에 適切하고 效率的으로 對應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러한 狀況에서, 國際間 데이터通信事業分野에 競爭原理를 導入하고, 多彩로운 通信需要에 對應할 수 있는 多元的인 데이터通信서비스

의 提供體制를 整備하는 問題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日本內에서 는 1985년 4월의 電氣通信事業法 施行이래, 多數의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에 의한 多元的인 通信서비스提供體制가 構築되어가고 있다. 제 2종 電氣通信事業은 제 1종 電氣通信事業에 비해 參入이 쉬운 事業分野이므로 활발한 新規參入과 創意性を 살린 事業展開를 통해 앞으로 日本의 網構築의 주된 擔當者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國際 데이터通信分野에서도 各個 企業活動別로 多様な 서비스의 提供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多數의 國際데이터通信서비스事業者가 출현하여, 각 事業體의 創意性を 살린 多彩로운 데이터通信서비스가 登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國際데이터通信事業分野에 대한 제 2종 電氣通信事業의 본격적인 參與은 國際데이터通信서비스 分野의 發展에 이바지하게 되어, 日本의 社會경제에 있어 圓滑한 國際化的 促進과 이에 따른 國際社會의 發展을 도모하게 된다.

### 3. 日本國內網의 國際化

현재, 日本에서는 産業經濟活動의 活性化를 위한, 異企業·異業種間의 接續과 多彩로운 情報通信機能을 구비한 綜合的인 網의 構築이 進展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數年內에,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에 의한 情報통신서비스를 根幹으로한 綜合的인 網構築이 급속히 進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綜合的인 網構築은 企業活動全般에 걸친 情報化를 배경으로 進展해 가는 것이나, 企業活動의 國際化的 進展과 함께, 이의 國際化도 필요하다. 앞으로 日本의 企業活動은 大企業, 中小企業을 불문하고 積極的인 國際化가 앞으로 더욱 強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國際的인 情報化에도 호응할 수 있는 國內網의 構築이 急先務다. 이 때문에 國內網과 國際網의 有機的인 一體化에

따라 綜合的이며 國際的인 網의 構築을 圖護하는 것이 使用費用節減과 企業活動의 國際化를 促進하는데 불가결하게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가 현재 構築中인 데이터通信망은 國際的인 데이터通信시스템으로 擴大되어갈 것이며, 이런 觀點에서 제 2종 電氣通信事業에 의한 國際데이터通信事業分野의 본격적인 參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 4. 國際通信秩序와의 整合性 확보

데이터通信分野에 대한 需要의 高度化, 多樣化 및 社會經濟의 國際化 進展에 따르기 위해서는 國內에 있어 데이터通信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國際的인 데이터通信서비스의 본격적 發展을 圖護해야 하며, 多元的인 國際데이터通信서비스의 提供體制構築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從來에는 日本內의 法制度 整備가 不充分했던 점등으로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의 國際데이터通信分野로의 參入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通信分野에서 先進國인 日本으로서는 現行的 國際通信秩序와의 整合性を 疎하며, 새로운 國際데이터通信서비스의 提供體制를 創設하고, 國際的인 網의 構築에 貢獻해야 하는 任務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의 國際데이터通信分野에 대한 參入이 가능하도록 日本內 法制度의 整備와 함께, 諸外國과의 調整을 도모하는 것이 日本의 情報通信政策의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다.

#### 5. 國際데이터通信分野에 대한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의 參入

이상과 같이, 國際데이터通信事業分野에 대한 제 2종 電氣通信事

업의 본격적인 參入을 조속히 實現하는 것은 日本의 社會經濟에 有益함과 동시에, 國際적으로 원활한 情報化를 달성해 가는 데에도 매우 的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의 國際通信分野 進出은, 國際通信秩序를 混亂하게 하고, 圓滑한 國際通信의 發展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므로, 參入過程에 있어 現行의 通信法制과의 整合性이 確保되어야 한다. 또, 제 2종 電氣通信事業의 國際 데이터通信事業分野 參入목적이

(1) 高度化, 多樣化하는 國際間 데이터通信需要에 效率적으로 對應하기 위해 競爭原理의 導入에 의한 多元的인 데이터通信서비스의 提供體制 構築과 事業者의 創意性 發輝에 의한 多彩로운 서비스實施를 促進할 것.

(2) 日本內 網의 國際的인 擴大를 도모하며, 國際, 國內網의 有機的인 結合을 이룸으로써, 國際的인 情報化에도 對應할 수 있는 基盤的 網을 構築할 것에 있다는 것을 充分히 考慮하여, 이들 目的이 達成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상의 觀点에서,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의 國際 데이터通信事業分野 參入을 위해, 이번 電氣通信事業法의 一部를 改正하게 된 것이다.

## II. 改正의 主要內容

### 1. 條約 등의 國際約束 遵守 (제 36조, 제 37조 關聯)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가 國際적으로 電氣通信事業者로서 認定되기 위해서는, 國際通信을 하는 日本의 電氣通信事業者가 國際電氣通信事業에 대한 條約과 기타 國際的 約束을 遵守한다는 것을 對外的으로 認識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改正에서도 제36조, 제37조를 改正하여 日本의 電氣通信事業者가 國際電氣通信事業에 관한 條約 및 그밖의 國際的 約束을 遵守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約束에 의해 賦課된 義務를 誠實히 履行하지 않아, 公共의 利益을 顯著히 沮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된 때에는 郵政大臣이 改善命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 2. 새로운 回線利用 規定

(제31조 제 3항, 제36조, 제38조 제 2항, 제39조 제 1항, 제 2항 關聯)

CCITT D1 勸告에 의하면, 一般利用者로서 國際專用回線을 賃借한 者는 電氣通信事業을 못하도록 엄격히 禁止하고 있다.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가 契約約款을 토대로 國際專用回線을 調達한 경우에는,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는 一般利用者로서 國際回線을 賃借하게 되므로, 이것을 利用하여 國際電氣通信事業을 하는 것은 D1勸告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다.

從來의 電氣通信事業法 제31조 제 3항 아래서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는 郵政大臣의 認可를 받은 約款에 의한 것이 아니면, 電氣通信用役을 提供하는 것이 認定되지 않고, 그 결과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는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로부터 國際回線을 調達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改正에서는 제31조 제 3항을 改正함과 동시에 제38조에 제 2항을 追加하여,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가 郵政大臣의 認可를 받아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와 個別契約을 締結하여, 이를 토대로 電氣通信用役을 提供(約款外 用役의 提供)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가 約款外 業務로서 調達한 國際回線은 一般利用자와는 다른 立場에서 調達한 回線이며, 이를 利用하면 國際

VAN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約款外 用役提供은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와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의 個別契約을 基礎로 한 것이며,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는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의 申請에 대해 法的인 應諾義務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가 約款外 用役提供에 대해 不當한 差別取扱을 할 경우에는 제 2종 電氣通信事業分野의 公平한 競爭條件을 顯著히 沮害할 憂慮가 있다.

따라서 제 39조 제 1항을 改正하여 公益上 특히 必要한 경우에는 特別제 2종事業者에 대해 約款外 業務의 提供이 가능하도록 郵政大臣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 36조를 改正하여,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가 約款外 用役提供에 있어 特定한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에게 不當한 差別取扱을 하여, 公共의 利益이 顯著히 沮害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郵政大臣이 改善命을 할 수 있게 했다.

### 3. 데이터通信網의 公平한 相互接續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 제 1항, 제 4항, 제 39조 제 1항, 제 2항 關聯)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가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서는 約款外 業務로서 調達한 國際回線을 사용하여 直接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외에, 直接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는 다른 電氣通信事業者의 데이터網과 接續하고, 그 데이터網을 經유하여, 間接的으로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본래 國際電氣通信事業은 外國側 電氣通信事業者와의 共同事業이며, 이 때문에 約款外 業務로서 調達한 國際回線을 利用하여 直接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서는 外國側 電氣通信事業者와 運用協定을 締結하여 파트너關係를 形成해야 한다. ( 또한, 特別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가 外國側 電氣通信事業者와 運用協定을 締結하려고 할 때에는 法 제40조에 의해 郵政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파트너關係에 서는 日本側 電氣通信事業者의 數는 外國側 電氣通信事業者의 數에 제한이 있는 점과 外國側 電氣通信事業者도 日本側 電氣通信事業者와 무제한으로 파트너關係에 서게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少數의 有力한 日本側 電氣通信事業者와만 파트너關係를 形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數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 直接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서는 設備面에서도 상당한 負擔이 隨伴하므로, 고객의 國際通信需要가 비교적 적은 電氣通信事業者는 오히려 直接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는 다른 電氣通信事業者의 網과 接續하여, 間接적으로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從來의 電氣通信事業法에서는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間的 公平한 接續만이 規定되고 있어, 제 2종 電氣通信事業의 데이터網이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의 데이터網과 接續하여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에 관련된 網間接續規定을 整備하여, 電氣通信事業者間的 公平한 相互接續을 認定함과 동시에 公益上 特別히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에 대해서도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 國際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특별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 와의 網間接續이 가능하도록 郵政大臣이 조치할 수 있게 했다.

具體적으로 다음과 같이 整備하였다.



- (1) 제 36조, 제 37조를 改正하여,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特別 제 2종 通信事業者가 接續, 共用에 있어서 特定한 電氣通信事業者에 대해 不當한 差別을 하여 公共의 利益이 顯著히 沮害될 憂慮가 있다고 認定 될 때는 郵政大臣이 改善命令을 내릴 수 있다.
- (2) 제 38조 제 1항, 제 39조 제 1항, 제 2항을 改正하여, 從來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間的 接續에 대해서만 規定하고 있던 것을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와 特別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間的 接續, 特別제 2종 通信事業者間的 接續 (日本內 特別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間的 接續은 제외) 에까지 擴大 適用했다.
- (3) 제 38조에 제 4항을 追加하여, 一般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와 제 1종 電氣通信事業者間的 接續, 一般 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와 特別제 2종 通信事業者間的 接續 및 日本內 特別제 2종 電氣通信事業者間的 接續·共用에 있어서는 接續 또는 共用에 관한 協定을 締結할 때에 郵政大臣에게 申告하도록 했다.